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5. 25(수) 조간		
배포일시	2011. 5. 24(화) 09:30	담당부서	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
담당과장	이후명 (2150-4750)	담당자	김봉준 사무관(2150-4751)

제목 : 최근 외채 증가에 대한 대응방향

- 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외채가 대외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옴
 - 이를 위해 '10.6월 「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」의 일환으로 선물환 포지션제도를 도입하고, '10.11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, '10.12월 '외환건전성부담금' 도입 발표 등 노력을 경주함
- 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 1/4분기 중 외채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은행부문의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※ 금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 '2011년 1/4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' 참조
 - 이는 역외의 NDF매도가 증가하고 은행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하고,
 -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투자하기 위한 은행의 외화차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

□ 위와 같은 단기외채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·금융위원회·한국은행·금융감독원은 지난 4.14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'외환건전성부담금'이 금년 8.1일 시행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,

-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단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고율의 부과요율을, 중·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저율의 부과요율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

* 계약만기 기준 1년 이하시 20bp, 1~3년시 10bp, 3~5년시 5bp, 5년 초과시 2bp

※ 4.20일 기재포된 보도자료 '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' 참조

□ 또한,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지난 5.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%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(<국내은행> 50% → 40%, <외은지점> 250% → 200%),

-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도 5월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후, 검사결과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음

※ 5.19일 기재포된 보도자료 '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%씩 축소' 참조

□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앞으로도 외채 증가,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

- 특히,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고,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임

기획재정부 대변인